자녀학비보조금지급 규정

개정2012. 8.22개정2012.10.29시행2012.10.30개정2012.10.24시행2012.10.26개정2018. 1. 4시행2018. 1. 8개정2019. 1.14시행2019. 1.14개정2019.12.23시행2019.12.27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직원 및 계약직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0.29>
- 제2조(용어의 정의)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1.4>
 - 1. "학교"라 함은 초·중등 교육법 제2조에 정한 고등학교과정 이상 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
 - 2. "자녀"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직계비속을 말한다.
 - 3. "학비"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하며,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다.
- 제3조(지급대상) ①공사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직원 및 계약직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,

자녀가 제2조제1호에 상응하는 국외의 중학교, 고등학교에 취학한경우 대상에 포함한다. 다만 법령에 의하여 학비면제 또는 학비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2.10.29.>

② 삭제 <2018.1.4>

- 제4조(지급기준) 자녀학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발행한 학자금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학비전액을 지급하되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2.10.24.> <개정 2018.1.4>
- 제5조(대여학자금) ①공사는 공사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임·직원 및 계약직 중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자에게 외부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및 대부금을 제외한 대학교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14>
 - ②학자금 대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9.1.14>
- 제6조(지급시기) 자녀학비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되, 학자금 납부고 지서 또는 영수증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- 제7조(신청서류)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민등록등본은 최초로 사안이 발생되는 때와 필요시에만 제출한다.
 - 1. 학비보조금 지급신청서(별표 서식)

- 2. 학자금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1부
- 제8조(지급제한) ①학비보조금은 수습기간 중에나 대기발령 또는 휴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상 상병 또는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제3조의 지급대상 자녀가 공무원 또는 기타 사유로 학비보조를 받을 때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는 2중으로 지급 신청할 수 없다. 다 만 장학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9조(위임)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10.29.>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2.10.24.>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1.4>

이 규정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1.14>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12.23.>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서식)

학비보조금지급신청서

취학자녀의 인적사항

신청인과의 관 계	성	명	성별	학 교 명	학과명	하년	납부금액

첨부서류: 1. 학자금 납부고지서 사본 1부

2. 주민등록등본 1통(필요시에 한함)

위와 같이 학비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소 속

직 위

성 명

(인)